

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54
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8. 12. 3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■ 개정이유

-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제7조(수수료)는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점당 10,000원 이하일 경우 무상제공하고, 그 이상 일때는 원가로 징수한다고 되어있음.
- 농기계 순회수리시 부품점당 10,000원 이상을 수선받고 전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10,000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므로 공평하게 수혜를 주기위해 10,000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징수토록 함.
 - '97 순회수리 1,037건중 75건(군세입 1,912,747원)

■ 주요골자

- 농기계 순회 수리시 부품 대금이 기종별 10,000원 이하는 현행대로 무상제공하고, 10,000원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.
- 제7조 조제목 “수수료”를 “부품대금”으로 한다.

■ 개정근거

- 거창군기감 05090-287('98. 6. 15)호 행정쇄신과제 검토결과

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조제목“수수료”를“부품대금”으로 하고 동조제1항및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①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종별 10,000원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,000원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.

②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③제1항의 부품대금을 순회 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수리 당일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수수료)①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점당10,000원 이하일 경우는 무상 제공하고, 그 이상일 때에는 원가로 징수한다. 단 농기계 점검 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《신설》</p> <p>②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은 군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부품대금)①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종별 10,000원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,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.</p> <p>②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 대금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제1항의 부품대금은 순회 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수리당일 현금으로 징수하여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